

이천시 조례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19· 8· 12 조례 제1517호

제1조(「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목“(계리의 원칙)”을“(회계처리의 원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계리”를 각각 “처리”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3조(「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4항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4조(「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계리”를 “처리”로 하고, 제19조의 제목“(계리상황의 보고)”를“(회계처리 상황의 보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 부분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5조(「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계리”를 “처리”로 하고, 제19조의 제목“(계리상황의 보고)”를“(회계처리 상황의 보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 부분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